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4.12.27일)

- ✓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강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원본·이자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믿을 수 있는 건전한 **대부업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4.12.27일) 하였음

< 주요 내용 >

- ▶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무효 근거 마련, 불사금융자 이자 무효화(20% → 0%)
 - ▶ **(국민 경각심 강화)** 미등록대부업자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불법대부광고 뿐만 아니라 불법채권추심·대부행위에 직접 이용된 전화번호도 차단
 - ▶ **(대부중개사이트 규율 강화)** 대부중개사이트의 자본금요건(1억 이상) 도입, 등록·관리 감독기관 상향(지자체 → 금융위), 불사금 이용목적 개인정보유통 처벌 등
 - ▶ **(지자체 대부업 등록·퇴출요건 강화)**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강화(1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대부업체 대표자·업무총괄사용인의 겸직 제한, 임원 결격요건 강화, 자진 폐업시 재진입 제한기간 확대(1년 → 3년)
 - ▶ **(처벌 강화)** 미등록대부업은 형법상 사기범죄 수준으로 처벌(징역 10년, 벌금 5억원), 최고금리 위반 등은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 최고수준으로 처벌(징역 5년, 벌금 2억원)
-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법이 전면 개정**되는 만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사항**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 ✓ 금융위원회는 **同 「대부업법」 개정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부업권의 준수 필요사항** 등을 **지도**해 나가는 한편, **내년 7월(잠정) 법 시행**에 맞춰 관련 **시행령** 등도 **조속히 개정**해 나갈 계획임

'24.12.27일(금),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신뢰제고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는 지난 9.11일 정부가 발표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는 15개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통과된 것이다.

* 정무위원회 전체회의('24.12.3일) → 법제사법위원회('24.12.24일)

** 강민국·김선교·최형두·한정애·서영교·조정식·민병덕·윤준병·김태선·박성준·천준호·박상혁·정태호·김현정의원안

1 대부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첫째,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한다. 또한, 이러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시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위반시 징역 5년이하, 벌금 2억원 이하) 금전대차거래의 이자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 불법사금융업자 수취 가능 이자 : 20% → 0%)

* “법상 최고금리(法 27.9% 內, 令 20%)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 (☞ 구체적인 이율 기준은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

** (해외사례) 일본 「대금업법」은 年 109.5%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금전대부계약은 무효화, 기타 해외 국가에서도 수백~수천%의 초고금리 수취시에는 무효화한다는 판례 등 존재

둘째,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변경, 불법대부 전화번호 차단 등이 추진된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을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경찰청·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과기부에 요청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범위도 현행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대부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확대하였다.

셋째,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의 주된 통로로 작용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우선,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로 상향하고 1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요건 및 「금소법」상 대출비교플랫폼 수준의 인적·물적요건과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등 정보보호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제공·중개 목적 外로 사용(예: 개인정보 판매 등)하는 것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불사금 등 범죄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금지(위반시 징역 5년이하·벌금 2억원 이하 처벌)하였다.

넷째,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 등에 대한 등록요건, 퇴출요건 등도 강화하였다. 지자체 대부업자 및 오프라인 전업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쪼개기 등록을 통한 금융위 등록 의무 회피 방지를 위해 대부업체 대표·업무총괄사용인의 타 대부업체 대표·업무총괄사용인 겸직을 금지하였다. 아울러, 지자체 대부업자의 임원 결격 요건도 금융위 등록대부업자 결격요건 수준으로 상향**하고, 자진 폐업시 재등록 금지 기간도 확대(1년 → 3년)하여 부적격자의 대부업 재진입을 어렵게 하였다.

* (지자체 대부업자) (法) 1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令) (개인) 1천만원 → **1억원**, (법인) 5천만원 → **3억원**으로 상향
(대부중개업자) <오프라인> (法) 자본요건 없음 → **3천만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온라인> (法) 자본요건 없음 → **1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예)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1)해임·면직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2)허가·등록이 취소된 법인·회사의 임직원이었다던 자로서 취소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포함

마지막으로,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도 대폭 상향하였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미등록 불법대부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범죄(징역 10년)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등에 대해서는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행위 처벌 최고수준(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 위반시 기관경고·주의조치 및 임직원 제재를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다.

* <처벌강화> 1)미등록 대부업 :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 **징역 10년, 벌금 5억원**
2)최고금리 위반 :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 **징역 5년, 벌금 2억원**
3)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 과태료(5천만원 이하) → **징역 5년, 벌금 2억원**

정부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①먼저, 국민들께서 불법사금융에 대해 ‘범죄행위’라는 보다 명확한 인식과 경각심을 갖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②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여 불법채권추심 등을 동반한 불법대부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보다 두텁게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불법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처벌과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불법사금융에 진입할 유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④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및 지자체 대부업권에 대해서도 등록요건 대폭 상향, 정보보호 의무, 퇴출요건 강화 등을 통해 대부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등록대부업권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불법채권추심을 동반한 반사회적 대부계약 등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효과가 대폭 높아질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안이 마련되는데 무엇보다 주안점을 두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으로는 강화된 등록요건으로 인해 다수의 대부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되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으나, 금번 법 개정을 계기로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는 퇴출되고,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대부업 시장이 개편됨에 따라 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등록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공급 시장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금번 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사항을 국민들께서 보다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도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6개월 후인 '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5.1월중 공포 → '25.7월 시행 예정)

*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등의 경우 신규 등록업자부터 적용하되, 기존 등록업자는 **법 시행 후 2년 내에 강화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도록 부칙에서 규정(☞ 未충족시 등록취소 사유)

정부는 同「대부업법」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감원·대부협회 등을 통해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 등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국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보완 사항도 지속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추가적인 대부업법 개정 필요 사항* 등은 조속히 국회에서 발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예)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법률상 지정근거 마련 등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책임자	과 장	전수한 (02-2100-2510)
		담당자	사무관	유원규 (02-2100-2514)
			사무관	성종현 (02-2100-2511)

참고 1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주요 사례

	주요 사례	현행	개선
반사회적 대부계약 해당 (등록대부· 여신금융기관 ·불사금 공통)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 반사회적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 예 : 대부계약 체결, 갹신, 기한연장, 변경 등을 조건으로 성착취 등 반사회적 행위 요구)		
	폭행, 협박, 채무자의 궁박함 등을 이용 + 현저히 부당한 계약(☞ 예 : 최고금리 초과 계약) 체결	<u>대부계약 유효, 최고금리(20%)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u> (☞ 채무자가 원금과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함)	<u>대부계약 전체 무효, 채무자는 원금을 반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무 없음</u> (☞ 채무자가 납부한 원금 또는 이자가 있다면 반환청구 가능)
	“법상 최고금리(法 27.9% 內, 令 20%)의 3배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을 체결 (☞ 예 : 수백~수천%의 초고금리로 대부계약 체결)		
반사회적 대부계약 未해당 (불사금업자)	불법사금융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 예 : 불법사금융업자와 연 수십%대 불법대부계약 체결 / 초고금리 요건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에는 未해당 전제)	<u>최고금리(20%)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u> (☞ 채무자가 연 20%의 이자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u>이자계약 전체 무효</u> (☞ 채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

※ 등록대부·여신금융기관의 대부계약으로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동사항 없음(현행 유지)

참고 2

등록/미등록대부업자 진입제한 · 처벌 · 제재 등 강화

		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포함)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
등록 요건		① (現) 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 → (改) <u>개인 1억원, 법인 3억원</u> * 여신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등)은 개별법 허가로 대부업 영위 ② 대부업 <u>대표자·업무총괄사용인(대부 사무소장)의 타 대부업 겸직금지</u> ③ 자진 폐업시 1년 → <u>3년간 등록제한</u> * 등록취소시에는 5년간 등록제한	X
미등록 영업 형벌		X	(現) 징역5년, 벌금 5천만원 → (改) <u>징역10년, 벌금 5억원</u>
최고 금리 위반	이자 효력	현행유지 (☞ 최고금리(20%) 초과부분만 무효)	(現) 최고금리(20%) 초과부분만 무효 → (改) <u>0%(이자무효화)로 제한</u> (☞ 0% 초과부분 무효, 이자 수취시 처벌)
	형벌	(現) 징역3년, 벌금3천만원 → (改) <u>징역 5년, 벌금 2억원</u>	(現) 징역3년, 벌금3천만원 → (改) <u>징역 5년, 벌금 2억원</u>
반사회적 대부계약 효력(민법 §103 구체화)		원금·이자 무효	원금·이자 무효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01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우선 확인하세요!

- 서민금융진흥원(☎1397, www.kinfa.or.kr)에서 소액생계비대출·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이용 여부를 우선 확인하세요!

02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하세요!

- “당일대출”, “누구나 대출” 등의 대출을 유도하는 대출광고에 유의하세요.

03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거래상대방이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04 합법적인 등록업체는 광고용 전화번호를 사전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 사전에 확인한 전화번호와 다른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또는 합법적인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부당행위 또는 불법대출 등을 권유하는 경우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대부업체가 등록된 지자체 또는 금감원(☎1332→3번)으로 신고하세요!

*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해당 지자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금감원

05 법정 최고이자율은 20%입니다!

- 법정 최고금리인 연20%를 초과하는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06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대출·대부 알선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07 대출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

-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성착취추심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의하세요.

08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확인·보관하세요!

- 대부계약체결시 대부업자에게 대출조건을 설명받고 반드시 대출조건이 명시된 대부계약서를 교부 받으세요.

09 최고금리 위반 및 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행위는 신고하세요!

-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 및 통화·문자 기록 등은 불법사금융 피해 증거입니다. 피해 사실을 금융감독원(☎1332→3번) 또는 경찰서(☎112)에 신고하세요!

10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 최고금리 위반,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우려)를 당한 경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세요.

*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3번) 또는 법률구조공단(☎132)를 통해 신청

참고4

불법사금융 피해유형별 대응 요령

① 불법 고금리 수취

▶ **(피해사례)** A씨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불법사금융업자인 甲업체에 1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실제로는 60만원을 수령한 뒤 7일 후 100만원 상환

* 실제 이자율 : $\text{이자} \div \text{대출원금} \div \text{대출기간} \times 365\text{일}$
 $40\text{만원} \div 60\text{만원} \div 7\text{일} \times 365\text{일} = \text{연 } 3,476\%$

▶ (대응요령)

- ① 불법사금융업자와 거래한 **은행계좌 입금 및 이체 기록 등 증거 확보**
- ② **1332 상담** 등을 통해 **이자율 계산** 후 불법 여부 확인
- ③ **경찰 112 신고** 또는 **금감원 1332**를 통해 **수사 의뢰**

② 불법 채권추심

▶ **(피해사례)** B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된 미등록 대부업자 乙로부터 일수 대출 1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당일 상환금액 5만원 공제 후 95만원을 현금으로 받음(매일 5만원씩 26회 상환 조건, 연체이자 1일 2.5만원)

- B씨는 현재까지 원리금 237만원을 지급하였으나 乙은 아직도 원금 50만원과 연체 이자 130만원이 남아 있다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출계약 당시 제공한 지인·가족 연락처 등을 통해 채무사실을 유폐하겠다고 협박을 당함

▶ (대응요령)

- ①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추가적인 **불법행위 중단 요청**
- ②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 동영상 촬영**을 통한 **증거자료 확보**
- ③ 불법추심 중단을 위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신청(금감원 1332)
- ④ **경찰 112 신고** 또는 **금감원 1332**를 통해 **수사 의뢰**

③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 **(피해사례)** C씨는 긴급자금이 필요해서 고민하던 중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1,000만원 대출 신청

-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을 올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작업비로 수수료 19.5%(195만원)를 송금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여 작업비 송금, 이후 연락이 두절됨

▶ (대응요령)

- ① **대출의 대가**로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반환 요구**
- ② **미반환**시, 불법사금융업자와 거래한 은행계좌 입금 및 이체 기록 등 **증거를 확보** 하고, **경찰 112 신고** 또는 **금감원 1332**를 통해 **수사 의뢰**